

의안번호	2205862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4.12.12.
추계번호	24C55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8조의3(지적 장애인 및 치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 정보수집 및 비용 지원)	(제1항)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이하 “지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이 조에서 “위치확인 전자장치”라 한다)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3(지적 장애인 및 치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 정보수집 및 비용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장애인등이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위치 확인 전자장치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장치 보급 지원 및 해당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상시 확인·탐지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지적장애인등이 실종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지적장애인등의 위치정보에 대한 상시 확인·탐지를 통하여 실종 또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현행 사업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아동등(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보호지원” 사업(2024년 예산 8억 7,600만원)을 통하여 실종아동등 찾기 물품, 위치추적단말기, 활동비 지원¹⁾을 하고 있음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림이(GPS) 보급 사업”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은 신발깎창형과 손목시계형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배회감지기를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음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인 치매환자는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신청 가능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추계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실종 등으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적장애인등의 수,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 확인 전자장치를 신청하는 대상자의 수, 상시 확인·탐지 대상자 중 위치추적단말기 및 배회감지기 등이 없는 자의 수, 상시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 탐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운영비, 정보시스템 설치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실종아동등 찾기 물품, 위치추적단말기, 활동비 지원은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위치추적단말기(GPS)와 찾기 물품(전단지, 현수막, 명함 등), 유전자 정보 포스터 제작·배포 등

- 참고로, 법무부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에 필요한 장치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에 56억 6,300만원의 예산(2024년 기준)을 배정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